



보도	2024.11.1.(금) 조간	배포	2024.10.31.(목)	
담당부서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책임자	국 장	권재순 (02-3145-7270)
		담당자	팀 장	김태훈 (02-3145-7260)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

< 주요 내용 >

- ①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임에도,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였고, 변칙적인 영업방식(속칭 '컴슈랑스*')도 성행하였습니다.

*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 ② '23.10월~'24.3월중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③ 아울러,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④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 추진 배경

-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 >

- **(4대 위법행위 공유·전파)** GA의 4대 위법행위* 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을 시리즈 형태로 공유·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소비자 주의 환기 도모
 - *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②부당 승환계약, 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④특별이익 제공
- **(제도개선 지속 추진)**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GA의 판매책임 강화 및 보험 회사의 GA 위탁위험(Outsourcing Risk)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추진
- **(연계·동시검사 정례화)** 보험회사의 자회사 GA에 대해서는 모회사 정기검사와 연계한 검사(연계검사), 초대형 GA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동시검사) 정례화

-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실시한 주요 검사 결과를 공유 중이며,
 - 금번에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검사 시 적발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주요 지적사례 및 향후 대응계획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 (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

II 최근 검사 실시 현황 및 결과

1 검사 실시 현황

가. 개요

-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였고,
 - CEO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속칭 '컴슈랑스*')도 성행하였습니다.
 - *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 언론 등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 '23.10월~'24.3월중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중점 검사사항

- **(수수료 부당지급)**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 여부
- **(특별이익 제공)**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 일정 금액[$\min(\text{연간 납입보험료} \times 10\%, 3\text{만원(건강증진형 상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 **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

2 주요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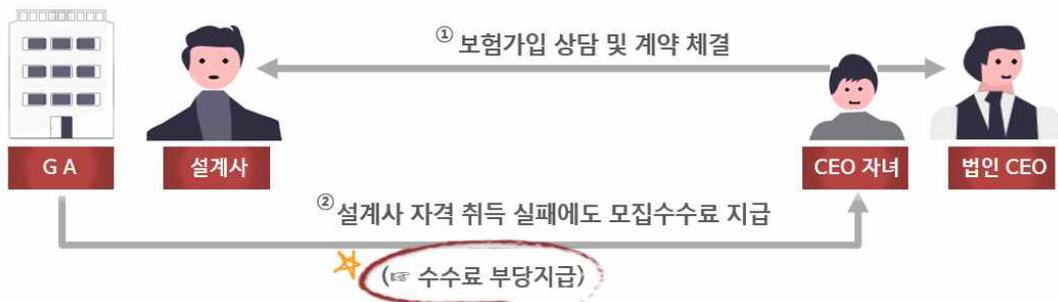
가. 수수료 부담지급

-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23.10월~'24.3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수수료 부담지급 현황 >

1 위반사례 예시

· OO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OO보험대리점의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여러번의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하였고, OO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수수료 부담지급 현황(잠정)

(단위: 건, 명, 억원)

회사	위반계약 건수	지급 무자격자수	위반금액	예상 조치 수준	
				기관	임직원
A 사	323	29	36.4	과태료, 업무정지, 기관경고·주의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B 사	166	112	28.3		
C 사	45	25	4.3		
D 사	16	13	3.1		
합 계 (평균)	550 (138)	179 (45)	72.1 (18.0)	-	-

*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나. 특별이익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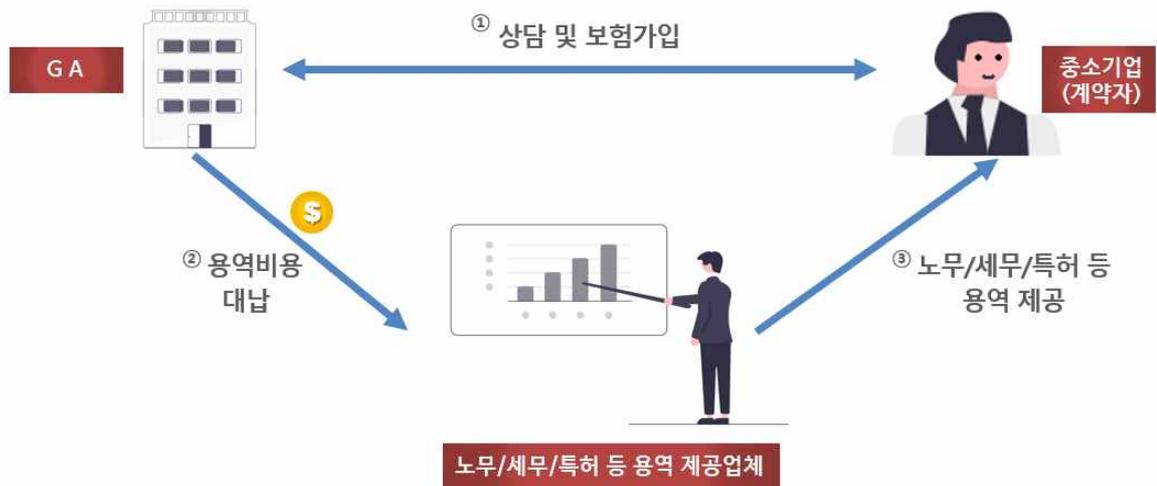
- 한편,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하였습니다.

< 최근('23.10월~'24.3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특별이익 제공 현황 >

① 위반사례 예시

·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무, 세무, 특허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

* (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관련 노무·세무비용 50만원
 이익소각(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관련 세무비용 300만원
 특허 출원 관련 비용 450만원



② 특별이익 제공 현황(잠정)

(단위: 건, 억원)

회사	위반계약 건수	위반금액	예상 조치 수준	
			기관	임직원
A사	59	6.0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표이사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Ⅲ 최근 이슈사항

- **(개인 대상 불완전판매 우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 * [민원사례] 개인사업자 A씨는 보험료의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법인이 아닌 경우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
 -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 절세, 목돈 마련 등을 내세우나 개인의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고,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 보장성 보험이라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

<참고> 경영인정기보험 개인 판매 현황

- '24.1~7월중 16개 생보사(경영인정기보험 취급사)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경영인정기보험은 전체 계약건수(3.6만건)의 44.4%인 1.6만건 수준 (* '24.7월 판매건수는 잠정기준)

(단위: 만건, %)

법인판매건수(A)	개인판매건수(B)	합계(C=A+B)	개인판매 비중(B/C)
2.0	1.6	3.6	44.4

- **(상품구조 왜곡 및 과당경쟁 우려)**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예: 5년)에 유지 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24.1~7월중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3.6만건)의 경우 60개월 유지 시 2.9만건에서 차익거래¹⁾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60개월 납입 시 납입보험금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최대 98.4%에 달함)
 1) (모집수수료 + 해약환급금 + 시책 등 - 환수금) > 납입보험료

IV 향후 계획

1 판매과정에서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 생보사(GA)에서 문제점 발견 시 GA(생보사)의 관련 문제점도 즉각 확인하고 피드백

-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2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을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 소비자 유의·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참고

- '24.4.17.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소비자경보 2024-17호, [바로가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6. (생략)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2의3. 삭제 <2017. 4. 18.>
- 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92조를 위반한 자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95조를 위반한 자 (후략)

-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 (생략)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후략)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후략)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후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 (생략)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생략)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후략)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별표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 제1항 관련)

1~14. (생략)

15.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략)

□ 舊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후략)

제209조(과태료) ①~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5조의4·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후략)